다이아몬드 감정
단체인증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15.12.09.(수) 15:00~17:00
- 장소 : MJC보석직업전문학교

- 주최 :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 주관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사)한국보석협회,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다이아몬드연마기술협회,
  한국주얼리평가협회 중앙회
- 후원 :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인사말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원로님들과 선후배 동료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규격 인증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준비를 위해 공동준비 위원장으로서 애쓰신 나대운 회장님과 윤웅섭 부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조기선 원장님(국제보석연구원)을 비롯하여 찬성패널로 나와 주신 김영출 원장님(한미보석감정원), 김재은 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반대패널로 나와주시는 김영호 실장님(우신보석감정원), 이의재 부원장님(현대보석감정원), 박제현 전임회장님(한국GIA동문협회)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반출단계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국내에서의 유통과 소매점에서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업계의 모든 분들께서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이번 개별소비세의 개정으로 우리 주얼리업계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만큼 정정 수익을 보면서 부가세를 받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가업으로 계승 발전시켜 하루 빨리 대한민국 명품주얼리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얼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 열리는 다이아몬드 감정 단체인증에 관한 공청회는 산업발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다이아몬드 감정규격 단체인증 공청회가 업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김종목

인사말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이제야 제대로 겨울 날씨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추운 날씨도 우리 업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나봅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단체장협의회와 개인의 사업을 뒤로 하고 희생하며 단체인증제도의 심의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해서 좋은 의견 주신 여섯 분의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흔쾌히 허락 해 주시고 오늘은 좋은 의견과 토론으로 여기계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수고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의 장단점과 개선해야 할 점,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집어보고 미래 우리 다이아몬드시장이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다이아몬드업계도 유래 없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감정체계와 함께 우리 다이아몬드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내용의 서안으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 공청회 공동위원장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회 장 나대운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회장 윤웅섭

공청회 진행 순서

-사회 :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회장 나대운

구 분	시 간	발표 내용	발표자 및 패널
개 회	15:00~15:05 (5분)	개회선언 국민의례	윤웅섭 부회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15:05~15:10 (5분)	인사말	김종목 회장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15:10~15:15 (5분)	패널 및 내·외빈소개	나대운 회장 (한국다이아몬드협회)
토 론	15:15~16:15 (60분)	찬성·반대 패널 토론	· 찬성패널1: 김영출 원장님 (한미보석감정원) · 반대패널1: 이의재 부원장님 (현대보석감정원) · 찬성패널2: 김재은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반대패널2: 박제현 전임회장님 (한국GIA동문협회) · 찬성패널3: 조기선 원장님 (국제보석연구원) · 반대패널3: 김영호 실장님 (우신보석감정원)
다 과	16:15~16:25 (10분)	Coffee Break	
질 의 응 답	16:25~17:00 (35분)	질의응답	
폐 회	17:00	종합평가 및 폐회	김종목 회장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목 차 / 발 표 주 제

01. 찬성패널 **06**
/주제 : 한국의 다이아몬드 감정의 현행 및 문제와 개선안
- 한미보석감정원 원장 김영출

02. 반대패널 **14**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견
- 현대보석감정원 부원장 이의재

03. 찬성패널 **20**
/주제 : 다이아몬드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김재은

04. 반대패널 **26**
/주제 : 다이아몬드 단체기준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입니다.
- 한국GIA동문협회 전임회장 박제현

05. 찬성패널 **34**
/주제 : 올바른 상관행의 첫 걸음 "비봉인"
- 국제보석연구원 원장 조기선

06. 반대패널 **50**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우신보석감정원의 의견
- 우신보석감정원 실장 김영호

※ 별첨자료 :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62**

01. 찬성패널

주제 : 한국의 다이아몬드 감정의 현행 및 문제와 개선안

- 한미보석감정원 원장 김영출

김영출의 1998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韓國의 다이아몬드 鑑定 制度에 관한 硏究'에서 표와 결론의 일부분만 발췌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소비자	1. 감정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낮아서 감정서에 의존도가 높다.	1. 감정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감정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는데 감정서는 필요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감정 기관과 판매상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식(고품질 선호 경향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
	2. 감정서의 신뢰도가 낮다.	2. 감정 기관 마다 감정 기준과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이아몬드의 실질등급을 비교할 수 없다. 3. 감정이 공정한 기준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감시하는 것이 어렵다.	2. 감정 기관들의 실질적인 기준과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 3. 유자격자가 감정을 해야 한다. 4. 감정 결과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판매상	1. 감정 기관이 1980년대 초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로 국제 통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행적인 감정을 함으로써 등급이 부정확하며 업계에 대한 공헌도 높지 않다.	1. 감정서 등급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감정 방식과 기준을 국제적인 통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감정기관의 협의체 성격의 단체도 필요하다.
	2. 일부 감정 기관은 다이아몬드의 감정서비스 뿐만아니라 매매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상은 업그레이드하여 자체 감정서를 발행하고 있다.	2. 판매할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여 실질 등급보다 명목 등급을 높여서 거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2. 감정 기관은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자체 감정은 공정성을 잃기 쉬우므로 제3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판 매 상	3. G, VVS_1이라는 명목상 등급의 같은 크기가 감정 기관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3. 소비자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다이아몬드의 구입을 회피하게 되어 다이아몬드 매출이 낮아진다.	3. 올바른 등급 중심으로 거래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신뢰를 회복하여 판매량이 향상될 것이다.
	4. 정보력이 낮고, 신기술의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	4. 합성석이나 처리석의 유입에 무방비 상태가 온다.	4. 판매상들의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빨리 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감정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5. 다수의 감정 기관에서는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하고, 1캐럿 미만에서는 D, E, F 색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5. 봉인되어 있으므로 다이아몬드 등급의 정도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D, E, F, G가 같은 가격으로 형성되므로, G등급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 선택의 폭이 좁다. 또한 지식의 확산 기회를 막아 버린다.	5. 식별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이 확보되고 기구가 준비되면 비봉인해야 한다. D, E, F 색 등급을 각각 정확하게 표기 하고, 올바른 감정을 위한 기준과 표기 방법을 통일할 협의회 성격의 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6. 감정 지식이 낮아 단순히 감정서만 첨부하여 판매하고 있다.	6. 전적으로 감정 기관에 의존함으로써 파행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감정 기관의 전횡적인 활동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6. 파행적인 감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감정기관	1. 판매자는 등급을, 소비자는 크기를 선택의 우선순위에 두었고, 감정 기관은 판매상들이 판매할 때에 최우선 관심을 감정 기관에 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크기를 중요시 하는 것은 소비 비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판매자들이 등급을 중요시 하는 것은 G, VVS_1 등급 명칭의 지명도 때문이다.	1. 모든 다이아몬드가 실질 등급과는 관계없이 명목상 등급이라도 G, VVS_1의 등급 명칭을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행 - 소위 G, VVS_1 중심의 거래 행위 - 때문이다. 감정서 내용을 보면 감정 기관들에 따라서 실질 색 등급과 실질 투명도 등급과는 관계없이 G, VVS_1이라는 명목 등급으로 감정서를 발행한다.	1. 다이아몬드의 감정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여 등급 중심으로 거래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2. 감정 기준이 국제 통용기준이 아니다.	2. 감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 기관 나름대로의 주관적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2. 감정기준의 통일은 소비국가로서의 국익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일부 감정 기관은 다이아몬드의 감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매매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상들은 업그레이드하여 자체 감정서를 발행하고 있다.	3.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하여 실질 등급보다 명목 등급을 높여서 거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다.	3. 감정 기관에서는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자체 감정서는 공정성을 잃게 되므로 제 3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하는 것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재감정을 의뢰 시 감정서의 등급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4. 등급의 오차로 인한 가치의 하락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4. 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감정인의 감정 자세와 감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5. 마스터 스톤을 GIA, CIBJO와 독자적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5. 색 등급의 차이로 인한 신뢰성의 저하와 업그레이드의 요인이 생긴다.	5. 색 등급의 통일을 위해서 마스터 스톤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감정기관	6. 대다수의 감정 기관이 D, E, F의 색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6. D, E, F, G의 가격이 같은 가격대가 되므로, G 등급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선택의 폭이 좁다.	6. 왜곡된 색 등급 방식을 개선하고 본연의 색 등급을 회복시켜야 한다.
	7. 감정서에 다이아몬드의 색이 자연색 또는 처리된 색 여부에 대해 일부감정기관만 표기한다.	7. 알 권리와 처리된 색의 다량유입으로 막대한 국가적인 손해와 신뢰도가 떨어진다.	7. 감별 기구 및 장비의 구비와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색상 처리 여부는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8. 대부분의 감정 기관에서 작도를 하지 않고 있다.	8. 감정된 다이아몬드와의 일치여부 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등급 뿐만 아니라 감정 후에 변화된 상태를 알 수 없다.	8. 작도는 감정된 다이아몬드와 감정서와의 일치 여부를 식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감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9. 감정하는 과정을 입회한다.	9. 감정의 공정성에 저해할 요소가 있다.	9. 감정의뢰인의 신분을 모르고 감정에 임해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10. 의뢰인이 요구하는 등급 이상만 선별적으로 감정서를 발행한다.	10. 대부분의 감정기관이 요구된 등급이상만을 감정하고 있는 것은 업계가 소위 G, VVS_1이라는 명목 등급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감정서의 의미가 다이아몬드 등급이 아닌 감정 기관의 등급으로 뒤 바뀌어 거래되는 기현상을 일으켰다. 감정 기관과의 유착관계 등이 발생한다.	10. 의뢰하는 다이아몬드는 모두 각 등급에 맞게 매겨서 감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11. 그릇된 등급제 판매가 실시되고 있다.	11. 신뢰도의 저하로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올바른 등급제 판매로서, 일관성 있는 다이아몬드 감정이 요구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감정기관	12. 다수의 감정 기관은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하고 있다.	12. 봉인되어 있으므로 다이아몬드 등급의 정확성을 알 수 없고, 등급 범위내의 정도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지식의 확산을 막아 버린다.	12. 판매자의 식별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이 확보되고 기구가 준비되면 비봉인해야 한다. 구매자가 직접 검사를 통해서 감정서 내용이 올바른지에 대한 검토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13. 감정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13. 유명무실하여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13.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재구성되어 감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14. 첨단 감정 장비의 구비가 미약하다. 처리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처리 여부가 표기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4. 합성석이나 처리석의 식별이 불충분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	14. 진보된 감정 장비의 구비를 함으로써 최신의 합성석과 처리석을 식별하여 감정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룬 이상의 주제는 현행 다이아몬드 감정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안의 시안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첫째, 판매자는 다이아몬드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익혀야 하고, 각 등급에 따른 가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이아몬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감정기관들은 감정제도와 방식을 표준화시켜 올바른 감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감정기관들은 새로운 전문기술 습득과 첨단 감정 장비의 확충이 요구된다.
다섯째, 감정인들은 건전한 감정의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
여섯째, 올바른 감정을 위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상에서 과제에 대한 연구,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된 연구 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고가 올바른 보석문화 창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02. 반대패널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견

- 현대보석감정원 부원장 이의재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견

1. 우리나라 감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감정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간동안 수없는 많은 감정원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반복된 역사를 통하여 지금의 감정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감정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GIA 감정규격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감정원들은 1,2등급 내지 2,3등급 차이로 감정원 서열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각 감정원마다 등급이나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외국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상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쉽다면 너무 갭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고 결국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감정원이라면 시장에서 서서히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도 단체인증 규격을 실시하고 있는 AGL도 서서히 쇠퇴하고 있고 CGL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인증에 관하여

단체장협의회에서 단체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운영주체 측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체인증을 실시한다고 해도 운영주체의 관리 부실은 확연히 보입니다.

그 많은 유통과정의 다이아몬드를 실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경비가 막대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검사 및 실사를 하는 위원은 공정성과 정확성, 결단성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정한 인물이어야 신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정감정원들을 업계의 매도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감정원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 마스터스톤에 관하여

현재 단협 산하의 주얼리센터에서는 지난해 GIA규격의 6부 마스터스톤 8개를 준비한 걸로 압니다. 이 마스터스톤은 GIA본교에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GIA에서 세계 8개의 분교감정원을 세우고 감정하면서 그곳에 있는 마스터스톤이 GIA본교에 있는 마스터스톤보다 조금 후한 정도의 마스터스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똑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각 나라의 분교감정원에서 발행된 감정등급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면서 6부 마스터스톤으로는 작은 사이즈 2부나 큰사이즈 캐럿 다이아를 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감정원은 3부 마스터, 5/6부 마스터, 캐럿 마스터 3개 셋트를 가지고 그 크기에 맞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6부 마스터스톤으로 다양한 다이아몬드를 감정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등급으로 감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4. 봉인,비봉인에 대하여

다이아감정 시 감정하는 물건을 봉인하느냐 비봉인하느냐의 문제는 업계요구의 결정사항이며 모든 업계종사자들이 비봉인을 원한다면 봉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계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업계의 시장상황을 보면 도·소매상, 중간상인들이 감정·감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구,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활성화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특별히 현대감정원의 경험상 G, VVS1 등급이상의 다이아몬드는 유통과정에서 감정서위조, 변조, 다이아거들 각인위조 등이 발견되어 지금도 소비자나 도·소매상들과 분쟁이 발생된 건수가 다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석업계의 정직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00% 비봉인감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5. ISO규격에 관련하여

ISO/ FDIS 11211의 기초로 2006년에 만들어진 KS규격은 감정의 용어라든지 감정기준의 등급표기방식 컷팅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정서에 기재될 내용, 등급기준 모든 것들을 대부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라나 내용 컷팅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ISO/FDIS 11211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각 감정원마다 독특한 방법과 기술로 감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번 국제규격, 국제규격을 따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가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6. 인증축소

지난 11월 정부는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인증제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203개의 인증제 중 36개를 폐하고 77개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GIA는 “(구)컷등급” 체계의 단순한 수치에 의한 등급보다는 다이아몬드 각 부분의 조합, 조화에 의한 컷등급을 재구성하여 사실상 컷등급 완화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앞장서 규제완화를 주도하고 세계 감정업계를 제패한 GIA가 등급완화로서 막강한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마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현실성이 결여된 규격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인증사후관리 미흡

지난 6월12일 부산에서 발생한 ISO 부정인증 사건에서 보듯이 ISO와 KS규격이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고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된 주된 원인은 부실인증과 인증 남발에 있습니다. ISO 와 KS 등 어떠한 규격도 인증절차와, 인증 사후관리가 규격의 제정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과 이를 관리할 인정기관 등 실제 규격을 수호

할 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규격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시장의 제반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기관을 확고히 수립하지 않은 채 규격을 제정하고 단체인증을 강행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8. 결론

결론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제외) 다이아몬드 규격을 단체인증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선진국인 미국의 GIA나 유럽의 HRD, IGI, EGL, 이스라엘 IGS 어느 곳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들 나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W감정원이 한국에서 최고라면 최고의 감정원이 되도록 세계 속에 우뚝설 수 있는 감정원이 되도록 보살펴주고, 감시하고 채찍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단체인증제도의 시행안에 앞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하여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03. 찬성패널

주제 : 다이아몬드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김재은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 설정 필요성

- 다이아몬드 감정이란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해당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의 소견임
- 다이아몬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는 '다이아몬드 감정서'라 불리는 전문가의 소견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따라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다이아몬드 나석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주얼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현재 국내에서 다이아몬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감정원은 10여개에 이름
- 국내 감정원의 등급 결정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아몬드 감정기준과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음
- 동일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감정원 별로 수용하기 어려운 등급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됨

감정원별 등급 비교

중량(ct)	구분	A 감정원	B 감정원	C 감정원
0.30	컬러	G	H	H
	클래러티	VVS1	VVS1	VVS1
	커트	Very Good	Good	Excellent
0.36	컬러	G	G	G
	클래러티	SI2	SI2	SI2
	커트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
0.50	컬러	G	H	J
	클래러티	VVS1	VVS1	VVS1
	커트	Excellent	Very Good	Excellent
0.50	컬러	G	H	H
	클래러티	SI2	SI2	SI2
	커트	Good	Good	Good
0.52	컬러	G	I	K
	클래러티	VS2	VS2	VS2
	커트	Very Good	Good	Very Good
0.52	컬러	G	H	J
	클래러티	VS1	VS2	VS1
	커트	Good	Fair	Fair
0.53	컬러	G	H	I
	클래러티	VS2	VS1	VS2
	커트	Good	Fair	Fair
0.57	컬러	F	E	E
	클래러티	SI2	SI2	SI2
	커트	Good	Fair	Good

- 감정서에 표기된 등급과 실제 등급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중량(ct)	구분	시료	D 감정원
0.21	컬러	L	F
	클래러티	VS1	VVS1
0.33	컬러	I	F
	클래러티	SI1	VS2
0.36	컬러	D	E
	클래러티	SI2	SI1
0.40	컬러	E	E
	클래러티	I1	SI1
0.53	컬러	J	F
	클래러티	I1	SI1
0.54	컬러	J	F
	클래러티	VS2	VS1

- 다이아몬드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대표 상품으로 다이아몬드의 등급에 대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정기준이 다른 감정기관의 경우, 자신의 기준을 밝히고 소비자가 혼돈하지 않을 고유의 용어를 사용함

GIA	HRD
D	Exceptional white+
E	Exceptional white
F	Rear white+
G	Rear white
H	White

단체 인증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정서에서 다이아몬드 나석 및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주얼리의 유통에서 감정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이는 국내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며 현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 시스템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정확하고 일정한 감정 서비스는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단체 표준의 제정은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주얼리산업의 모든 사람들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편의가 공정히 얻어 지도록 하기 위함임

- 제정된 단체 표준을 준수하는 감정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여 다이아몬드 관련 업종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얼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04. 반대패널

주제 : 다이아몬드 단체기준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입니다.

- 한국GIA동문협회 전임회장 박제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GIA 전임 회장 박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준비 중인 단체기준안에 대해 심각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분류해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감정원별 약관의 문제입니다.

둘째,

감정상 오류를 확인할 길 없는 봉인감정의 문제입니다.

셋째,

단체인준 감정원의 등급 통일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체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아닌 발전적 협의 차원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감정원의 사용 약관은 공적이냐 사적이냐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감정원의 정의"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정원은 개인의 기업이지만, 감정원의 기본업무는 굉장히 공적이고 소비자인 국민의 금전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시장 장악력이 있는 감정원은 더더욱 공익에 부합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정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매입보상하고 있으니 책임을 다했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의 경우, 공정하고 공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의 단체통일 기준안을 만들

어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봉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진국시절 국민의식에 맞춰,

다이아몬드는 감정하여 봉인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상권보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판매단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였지요.

물론 봉인된 감정서는 GIA 등 국제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감정사 만 명 시대에 이러한 봉인은 후진국형 문화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레이저 각인이 나온 이후부터는 봉인 발행부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이런 봉인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원의 직원비리가 생산되고 있다는 의심은 떨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원이 "떳떳하다", "문제없이 보상한다" 하지만 봉인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감정원 측에서는 봉인으로 인해 시장이 맑아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감정원 입장에서도 직원과 등급관리에 대해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원은 이전부터 비봉인 서비스를 했다합니다.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비봉인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요금의 차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봉인 서비스가 있으되 봉인이 관행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봉인 할 경우, 봉인감정요금에 대하여 20% 정도의 할인이나 차등을 두게 되면 비봉인 문화는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셋째,

단체인준의 감정 등급 통합의 문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문화와 유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의 감정문화가 기준 확립의 정확성이었다면, 현재의 감정은 등급의 다양성을 토대로 발전해 나간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감정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단체기준이 요구하듯이 GIA등급을 토대로 한 KS기준 적용 시 GIA와 단체기준은 동일하게 됩니다.

단순히만 생각해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세 상으로만 봐도 수입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통구조상 외국에서 쉽게 GIA감정을 해서 들어오는 다이아들을 가지고, 그와 똑같은 등급의 단체기준이라고 홍보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 감정서와 GIA감정서를 함께 동봉한 상품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구요?

해외 현지에서 GIA감정을 하면 되는 스톤을, 작은 한국시장을 위해 GIA감정 안하고 따로 빼서, 저희 나라로 보내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는 불가 할 것이고...

어렵게 마련한 단체기준안은 유통물량이 없음으로

시작과 동시에 장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등급의 관리입니다.

감정원 관련자를 제외하고 여기에 그 누구도 등급기준의 관리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체기준이 정관을 고치고 비봉인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 등급은 미묘하고도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GIA도 등급의 관리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감정원을 관리해 본 노하우가 전무후무한 우리 단체가, 이러한 30년형 비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외부인사도 아니고 가족끼리 등급가지고 인증하고 인준 해 준다고 그것이 잘 관리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문제인 "단체기준의 등급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로맨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단체기준"이 민형사상의 통합약관을 정해서 사용하고, 비봉인을 하되 가격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협의체를 두고 관리발전 시키되,

여기에 불참하는 감정원은 언제든 인증자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감정 단체인증은 뿌리내리게 되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후 발전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재의 기준안이 감정원별 등급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감정원이든 GIA이든 현재 세계의 모든 감정원들이 느끼는 가장 불안한 요소는 시장의 다변화 다각화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얘기 하더군요

G감정원이 불안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문어발식 확장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감정서가 발행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등급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감정사 누구든 KS와 일치하는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 조류가 정확한 기준을 요구하기보다는 독창적인 등급 기준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단체기준이 시대적 조류에 맞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GIA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등급을 개발해 우리 시장 점위율을 장악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단체 등급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 몇몇 감정원의 시행착오와 현재 나름의 생존방식을 연구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은 감정원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버진 감정원입니다.

우신감정원이 G컬러를 선택할 시에 F컬러 감정을 선택하여 시장에 진입하였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재매입 업체를 만들고,

전자시세표를 구성하여 전국에 배포, 유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완벽한 유통을 구성했지만 현재에는 충청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 일부에서만 소수 유통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감정사도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관리입니다.

또한 과거 1캐럿 이상의 중량에서 GIA를 능가했던, 미조, 한미 주도의 감정 시장이 왜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시대조류를 인식하고 대비하며 종사직원 관리문제도 배제해서는 안 되구요.

정확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미래감정원 역시, 감정에서 유통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이 듭니다. 홈쇼핑은 성공했지만 시장진입에서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최근 GIA에 맞서 국내시장을 놓치고 있지 않는 우신의 경우, 유통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고 다양성과 등급관리로 성공한 역설적이 케이스이구요.

국내 시장에서 도매유통을 이용하여, 현대SI2 시장에 도전해 유통시세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삼성감정원의 경우도 좋은 성공 사례겠지요.

자! 실패와 성공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와 향후 단체기준제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워하는 상대라 해서 배척하고 그 장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

지금처럼 단체기준을 이용해 개별 감정원의 등급문제를 고정화시킨다면,

결국 우리시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할수록 GIA에 가까워진다는 기준은 결국 우리를 망칩니다.

왜? 무엇 때문에 GIA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감정기준이, GIA기준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글들이 모두, GIA 뒤에 서서 가자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우리 단체기준이 여러 경우를 아이디어 삼아,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배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의체로 발전시켜 "합법적 정관"과 "비봉인문제"는 관리 감독하되,

시장의 다양성과 유통을 방해하는 "개별등급개입"은 완강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구요. 시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연구한 "단체기준"은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는 소매와 소비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찬성패널

주제 : 올바른 상관행의 첫 걸음 “비봉인”

- 국제보석연구원 원장 조기선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의 필요성

감정서의 목적과 효용

1. 다이아몬드 품질의 차이나 특징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가로 다이아몬드를 구입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또 업자 간(국내, 해외)에 공통용어로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없이도 정도 상담이 가능.
3. 통일된 업계 공통용어를 사용해 사원교육과 업자간 차이를 방지할 수도 있다.
4. 특히 해외 가격정보를 참조할 때에도 편리하다.
5. 원래는 교육이 목적이었던 그레이딩 시스템은 4C와 그 외의 몇 가지의 요소만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완전한 품질검사서 라고는 할 수 없다.
6. 그레이딩 결과가 같다고 해도 개개의 다이아몬드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휘광)은 단지 4C의 기준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
7. 보는 사람 개개인의 심미안, 가치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포트는 지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그레이딩 리포트란
가격평가서가 아닌 건강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와 같은 것.

2. 의사는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게 된다.

3. 보석상은 이러한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

아래 영문은 4C 시스템을 만든 GIA의 Diamond Grading Report에 명기되어 있는 주의사항이다.

This Report is not a quarantee, valuation or appraisal and contains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amond described herein after it has been graded, tested, examined and analyzed by the GIA Laborstory at the time of the examination and/or inscription. The recipient of this Report may wish to consult a credentialed jeweler or gemologist abou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요약하면 이 리포트는 보증이나, 가치판단, 또는 가격평가서가 아니고 단지 다이아몬드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 리포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석상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이다.

JBA

우리나라 감정서 주의사항

감정서 유의사항 예시(다음 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감정서 주의사항

유 의 사 항

1. 본 감정서는 '4C' 원칙에 근거한 다이아몬드 등급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2. 중량 단위는 메트릭 캐럿(Metric Carat)으로 표기하고, 전자 저울로 측정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3. 봉인 감정서 구입시 봉인 부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정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을 비교 확인하여 주십시오. 비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본 감정소에 감정서를 지참 내방하시면 무료로 확인 하여 드립니다.
4. 비봉인 감정서 구입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정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을 비교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입 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본 감정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다이아몬드 거들 부분의 레이저 각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정 및 제거가 가능하므로 각인이 감정서 대비 다이아몬드의 동일 여부 및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6. 복사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세공 후에도 감정서와 비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확인하여 드립니다. (단, 세공에 따라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7. 본 감정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전의 감정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재감정' 은 본 감정서를 감정 전에 제시하였을 경우에만 한합니다.
8. 등급의 정정 및 첨삭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기록(표기)된 사항은 변조를 금하며, 재연마(수리)한 경우라도 임의 작성된 감정서보다 반드시 등급에 상향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9. 다이아몬드 바꿔치기, 위조된 감정서도 있었으니 반드시 믿을 만한 유통과정을 거쳐 구입하시고 본본 상단에 '이서' 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10. 본 감정소가 감정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 결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감정기술 및 감정장비 발달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본 감정소는 감정 의뢰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의뢰된 다이아몬드의 천연 · 합성 · 인공 처리 여부를 시험(비파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감별 시험 결과는 시험 당시 시점의 본 감정소의 기술로 판단하며 미래의 감별 기술 및 감별 장비 발달로 인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12. 본 감정소의 주요 업무는 보다 공신력 있는 보석 감정 및 감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i) 보석 감정 및 감별 서비스 활동의 데이터 베이스화
    (ii) 보석 감정 및 감별 서비스 목적 범위 내 비파괴 분석 및 연구
    (iii) 보석 감정 및 감별 서비스 목적 범위 내 사진 촬영

    위 활동에 의거한 모든 자료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본 감정소에 속합니다.
13. 본 감정서는 감정 당시 최대의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고의 혹은 악의에 찬 감정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14. 본 감정서는 가격 평가서가 아닌 순수한 '등급 소견서' 이므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5. 본 감정소에서는 일체의 시세 상담 및 매매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16. 본 감정서의 다이아몬드 컷트 등급은 이스라엘 사린(Sarin)사의 다이아비전(DiaVision)에 근거하여 측정 및 등급하였습니다.
17. 본 감정서는 본 다이아몬드 지참인이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본 감정서는 국제 감정규격인 GIA HRD 등의 국제적 기준과 국제공인 ISO (International Orgar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정에 입각한 등급 체제인 "4C" 원칙을 적용 하였습니다.
2. 중량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메트릭캐럿(Metric Carat) 으로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을 표시합니다.
3. 본 감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 개정 된 경우와 복사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본 감정서의 무단 변조나 위조 도용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4. 본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감정당시의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수리나 세공 보완의 부주의로 변화된 경우 본 감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5. 본 감정서는 감정의 정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숙수한 등급 소견서(Report) 이므로 민, 형사상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본 감정원은 감정 의뢰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의뢰된 다이아몬드의 천연, 합성, 인공 처리 여부를 시험(비파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감별 시험 결과는 시험당시 시점의 본 감정원의 기술로 판단하며 미래의 감별 기술 및 감별 장치 발달로 인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7. 본 감정서는 의뢰 당시의 다이아몬드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본 감정서의 다이아몬드 컷트 등급은 이스라엘 사린(Sarin)사의 다이아비전(DiaVision)에 근거하여 측정 및 등급 하였습니다.
9. 본 감정원은 일체의 시세 상담 및 매매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감정서는 다이아몬드의 지참인이 반드시 보관 하여야 합니다.
10. 다이아몬드의 바꿔치기와 위조된 감정서도 있을 수 있으니 믿을수 있는 유통과정을 거쳐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11. 본 감정서는 본 감정원의 서면 허락 없이 어떠한 상업적인 선전,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본 감정서는 '4C' 원칙에 근거한 다이아몬드 등급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2. 복사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세공 후에도 감정서와 비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공에 따라 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3. 본 감정서를 분실하였을 시에는 감정기록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재감정' 은 본 감정서를 감정 전에 제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비봉인 감정서를 구입시에 이상 유무와 본 감정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이아몬드 거들 부분의 레이저 각인은 어떤 방법으로 수정 및 제거가 가능하므로 각인이 감정서 대비 다이아몬드의 동일 여부 및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 중량은 Carat천평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7. 등급의 정정 및 첨삭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기록(표기)된 사항은 차후 식별을 위한 것이므로 변조를 금합니다. 변조된 감정서는 무효입니다.
8. 다이아몬드를 바꿔치기 하거나, 위조된 감정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믿을만한 유통과정을 거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9. 본 감정서는 가격평가서가 아닌 순수한 '등급소견서' 이므로 형사 혹은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0. 본 감정서는 정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감정의뢰 당시 다이아몬드의 세척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누가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본 감정원에서는 일체의 시세상담 및 매매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12. 본 감정서는 본 다이아몬드 지참인이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13. 본 감정서는 감정 당시 최대의 공정을 기하며 고의 혹은 악의에 감정요청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14. 본 감정서는 감정할 당시의 상태를 감정한 것이므로 파손, 품질의 변화 또는 수리, 보관, 세공 등의 부주위로 인하여 변화 되었을 때에는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감정서 주의사항

3. 봉인감정서 구입시 봉인 부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정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을 비교 확인하여 주십시오. 비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본 감정소에 감정서를 지참 내방하시면 무료로 확인하여 드립니다.

4. 비봉인 감정서 구입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정서에 기입된 모든 사항을 비교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본 감정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다이아몬드 거들 부분의 레이저 각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정 및 제거가 가능하므로 각인이 감정서대비 다이아몬드의 동일 여부 및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6. 복사된 감정서는 무효이며 세공 후에도 감정서와 비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확인하여드립니다. (단 세공에 따라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7. 본 감정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전의 감정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재감정"은 본 감정서를 감정 전에 제시하였을 경우에만 한합니다.

9. 다이아몬드 바꿔치기, 위조된 감정서도 있었으니 반드시 믿을 만한 유통과정을 거쳐 구입하시고 본면 상단에 "이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14. 본 감정서는 가격 평가서가 아닌 순수한 "등급소견서" 이므로 형사 혹은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파포트 리포트 (Index)

1.51	G	SI1	GA	5889	-25%	2.02	I	VS2	GA	6712	-29%	3.51	K	VS2	GA	7154	-10%		
1.50	G	SI2	GA	4436	-32%	2.01	I	SI1	GA	6577	-24%	3.08	K	SI1	GA	6132	-16%		
1.51	H	IF	GA	8266	-14%	2.01	I	SI2	GA	5569	-29%	3.07	K	SI2	GA	5801	-11%		
1.50	H	VVS1	GA	7438	-19%	2.29	J	IF	GA	7681	-19%	4.36	D	VVS2	GC	35968	-11%		
1.50	H	VVS2	GA	6915	-22%	2.01	J	VVS1	GA	7453	-18%	4.00	D	VS1	GB	27043	-17%		
1.50	H	VS1	GA	5292	-37%	2.01	J	VVS2	GA	6930	-22%	4.07	D	VS2	GB	25512	-7%		
1.51	H	VS2	GA	6209	-23%	2.10	J	VS1	GA	6101	-27%	4.01	D	SI1	GA	19467	-6%		
1.50	H	SI1	GA	4935	-33%	2.00	J	VS2	GA	5586	-27%	4.06	D	SI2	GB	13834	-11%		
1.50	H	SI2	GA	4557	-27%	2.01	J	SI1	GA	4988	-31%	4.15	E	IF	GC	30650	-31%		
1.52	I	IF	GA	6544	-20%	2.04	J	SI2	GA	4706	-30%	4.00	E	VS1	E	17382	-40%		
1.50	I	VVS1	GA	5985	-25%	2.11	K	IF	GA	6804	-16%	4.08	E	VS2	GB	23814	-6%		
1.50	I	VVS2	GA	5979	-23%	2.06	K	VVS1	GA	6802	-14%	4.06	E	SI1	GB	17493	-11%		
1.50	I	VS1	GA	5513	-27%	2.1													
1.52	I	VS2	GA	5292	-24%	2.2													
1.53	I	SI1	GA	4429	-32%	2.2													
1.76	I	SI2	GA	3234	-42%	2.14	K	SI1	GA	4687	-24%	4.06	F	VS2	EA		-34%		
1.61	I	IF	GA	6027	-14%		K	SI2	GA	4263	-27%	4.04	F	SI1	GA	17577	-6%		
											-16%	4.02	F	SI3	EA	4410	-50%		
											-18%	4.00	G	IF	GA	28728	-9%		
											-16%	4.10	G	VVS1	GA	26534	-6%		
1.52	J	VS2	GA	4242	-27%	3.02	D	VS1	GB	23591	-14%	4.02	G	VVS2	AB	23294	-11%		
1.50	J	SI1	GA	4043	-27%	3.01	D	VS2	GA	19114	-14%	4.02	G	VS1	EA	20916	-16%		
1.51	J	SI2	GA	3570	-27%	3.02	D	SI1	GA	13251	-21%	4.00	G	VS2	GA	14191	-33%		
1.53	K	IF	GA	4832	-18%	3.06	D	SI2	GA	10546	-15%	4.04	G	SI1	GA	11781	-31%		
1.50	K	VVS1	GA	4190	-27%	3.00	E	IF	GB	26775	-29%	4.01	G	SI2	GA	12674	-11%		

4.04 F SI1 GA 17577 -6%

1.76 I SI2 GA 3234 -42%

다이아몬드 감정제도의 문제점

WWW.FTC.OR.KR

봉인을 하는 목적

1. 감정원은 신과 같아 절대로 감정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믿어라.
2. 봉인은 완벽해서 절대로 위조할 수 없다. 문제다 있다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소매상과 중간도매상 공장은 틈만 있으면 바꿔치기 한다.
   소비자는 소매상이나 공장에 다이아몬드를 맡겨서는 안 된고 끝까지 감시하라.
4. 비봉인이 되면 재감정이 줄어든다.
5. 우리나라 소매상은 무식해서 감정서를 확인할 능력이 없어 중간도매상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6. 감정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7. 봉인으로 도매상과 점포가 없이 장사하는 분들을 도와 드려야 한다.

누구를 위한 봉인인가?

감정원들은 봉인이 도소매상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매상에서 88년부터 비봉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인일까요?

귀금속보석공정거래위원회
JEWELRY FAIR TRADE COMMISSION

봉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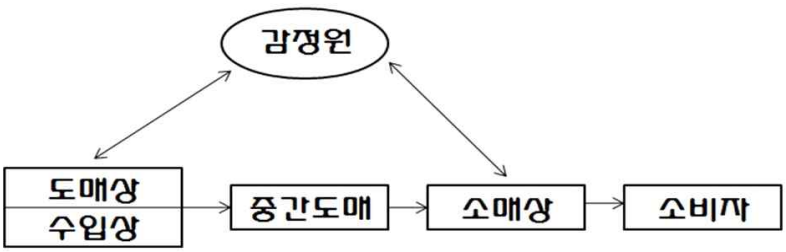

- 소매상의 내가 구입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 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똑 같은 가격이 될 수 없다.
- 감정원이 아무리 잘못 감정을 하더라도 견제세력이 없어진다.
- 감정서가 딱지화되어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
- 다이아몬드전문가를 길러낼 수 없다.

감정감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

일본의 감정·감별 역사(I)

- **1960년대 초반**
  – 감정·감별 시작
- **1967년**
  – 丸井의 다이아몬드 『감별서』를 이용한 판매작전 성공으로 감별·감정 붐 형성
- **1971년**
  – **GIA JAPAN (AGT)**에서 **GIA** 교육 시작
- **1976년**
  – 『비틀린 피라미드』 사건 발생
- **1981년**
  – 『보석감별단체협의회』 **(AGL)** 구성
- **1988년**
  – **JJA**(일본주얼리협회) 결성 및 **JJA·AGL** 협의하에 다이아몬드 원기(컬러) 도입 결정
- **1988년**
  – **JJA**(일본주얼리협회) 결성 및 **JJA·AGL** 협의하에 다이아몬드 원기(컬러) 도입 결정
- **1992년**
  –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 원기(컬러) 도입
- **1994년**
  – **JJA·AGL** 공동으로 『寶石의 情報開示』 시작

감정감별 정상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다이아몬드 감정의 문제점

- 그레이딩 상의 문제점
  - 감정원마다 다른 등급에 의한 가격 형성의 문제점
  - 기구 및 감정 환경의 불일치
  - 도덕성에 관한 문제
  - 감정상의 기술적인 문제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

- **1960년대 중반**
  - 한국보석과학원(배형순), 미조보석감정원(신광섭)
  - 국내 최초 감정 시행
- **1979년**
  - 우신보석감정원(고 오희남)의 등장
- **1984년**
  - 서울 로얄호텔에서 감정에 관한 전국 세미나
- **1987년**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발족
- **1988년**
  - 한국보석감정인협의회의 구성
- **1988년**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감정인협의회 공동으로 감정규약 발표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I)

- **1984년**
  - 서울 로얄호텔에서 감정에 관한 전국 세미나
- **1987년**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발족
- **1988년**
  - 한국보석감정인협의회의 구성
- **1988년**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감정인협의회 공동으로 감정규약 발표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I-1)

• **2차 토론회의 중요 의결사항**

1. 다이아몬드와 감정서의 분리 (봉인금지)

2. 중량표시 – 소수점 **2**자리까지
단, 올림은 소수점 세 자리가 **9**일 때에 한함

3. 3부의 감정서 작성
소비자, 판매업소, 감정원 각**1**부씩 보관

4. 감정소의 시설 기준 제정

5. 등급별 시세정보 전달

6. 실시시기 **: 1988**년 **9**월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I-2)

• **중앙회에서 우신감정소에 분리촉구 공문 발송**

귀금중 : 88-216 1988. 12. 2

수 신 : 우신보석감정소 소장 오희남
제 목 : 다이아몬드와 감정서의 분리 촉구

1. 귀 감정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중앙회에서는 (중략).....
지난 9월부터 다이아몬드 등급별 판매를 실시키로 하고 동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88.12. 1일부터는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분리하기로 결의하였던 바
3.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분리하자는 근본취지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판매상에서 감정서와 다이아몬드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중략).....
4. 당 중앙회에서는 현재 귀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봉인 감정을 즉시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중략).....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II)

- **1993년**
  - 보석감정사 자격제도 실시
- **1995년 12월**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주최의『올바른 상관행』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실패
- **1996년 4월**
  - 세미나정석회 주최의『올바른 상관행』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실패
- **1999년 12월**
  -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주최의『올바른 상관행』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실패

우리나라 보석감정의 역사적 고찰(IV)

- **2003년 5월**
  - 귀금속보석공정거래위원회 발족
- **2003년 6월**
  - 귀금속보석공정거래 추진위원회 가동
  - 귀금속보석분쟁조정위원회 가동
- **2003년 8월**
  - 산업자원부 주관『다이아몬드 감정표시에 관한 **KS**규격화』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05년 5월**
  - 다이아몬드봉인에 대한 의견 및 사례모음 공청회
- **2007년**
  - 다이아몬드**KS**규격마련

    당시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를 단체장회의에 올렸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못했음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도전

감정기준에 관한 문제

· 단체장협의회에서는 현재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외국의 감정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감정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이아몬드 감정 단체규정"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 감정기준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KS규격을 사용한다.
(컬러나 클래러티, 캐럿 기준은 그대로 하고 프로포션에 대한 문제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

· 가장 어려운 부분이 컬러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GIA로 부터 "1차 마스터스톤"을 도입(현재 도입되어 있음)해 단체인증에 찬성하는 감정원들은 마스터스톤의 오차를 가능한 한 줄인다.

· 단체인증에 찬성하는 감정원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스톤과 "1차 마스터스톤을 비교하고 마스터스톤의 인증을 받는다.

·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위원회를 두고 "1차 마스터스톤"과 인증감정원의 감정결과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감정을 하는 감정원은 인증을 취소한다.

· 이 기준에 맞추어 감정하겠다고 하는 감정기관을 선정합니다.

· 단체장협의회에서는 단체인증에 참여하신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같은 등급의 GIA와 우신과의 가격비교

(단위: 원)

GIA			우신			GIA / 우신	
등급			등급			% 비교	
중량(ct)	SI1/F	SI2/F	중량(ct)	SI1/F	SI2/F	SI1	SI2
0.30	490,000	442,000	0.30	420,000	375,000	90(-10)%	84(-16)%
0.50	136,4000	1,170,000	0.50	1,100,000	1,045,000	80(-20)%	89(-11)%
0.70	2,835,000	2,394,000	0.70	2,205,000	2,086,000	77(-23)%	87(-13)%
1.00	7,600,000	5,985,000	1.00	5,320,000	4,400,000	70(-30)%	73(-27)%

2015년도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성명	협회명
김종목 회장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최장혁회장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오세계 이사장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김현만 회장	한국보석마케팅최고매니저협회(KOGEM)
김배섭 회장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
정권천 회장	한국시계협회
이황재 회장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이봉승 이사장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오효근 회장	한국귀금속장맥회
김재언 회장	한국주얼리제조협의회
박준서 회장	(사)한국보석협회
유동수 회장	(사)한국금협회
나대운 회장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손경찬 회장	한국진주협회
김현만 회장	코리아다이아몬드연마기술협회(KODA)
정의철 회장	한국순금협회
박은숙 회장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배채수 회장	한국주얼리평가협회
강웅기 회장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김윤섭 회장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컬러) 인정제도 ☆☆☆

* 다이아몬드 그레이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일반사단법인 감별단체협의회(이하 AGL)과 일반사단법인 일본주얼리협회(이후 JJA)는 7년의 세월에 걸쳐 평성6년 10월에 일본의 다이아몬드컬러 그레이드의 기준석이 되는『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 원기』(이후 원기)를 설치했다.

* AGL은 원기를 기본으로 엄정하게 선택한「JJA/AGL인정 마스터스톤세트」를 보유할 것을 회원에게 의무화시켰다. 약 2년의 예비기간 후 평성 8년 9월 1일에 「다이아몬드마스터 스톤(컬러)인정제도」를 개시했다. 동일(同日) 원기의 공평하고 원활한 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컬러)원기운용관리위원회」(이후 원기운용관리위원회라 칭한다)가 발족되었다.

* 원기운용관리위원회는 AGL, JJA로부터 동수 위원(각 6명 이내)와 AGL, JJA 쌍방의 추천으로 제3자의 유식자(有識者)인 위원장을 포함 합계 13명 이내로 구성되는「독립된 조직」이다. AGL회원간에 컬러 그레이드에 큰 차이가 났을 때 판정의뢰에 의해 원기운용관리위원회가 판정을 해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인정의 취소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 「AGL/JJA인정 마스터스톤 세트」에는 세트마다 번호가 붙여져 다이아몬드의 거들부분에 인정번호와 컬러가 각인되어 있다. AGL회원이 퇴회 또는 제명이 되면 회원자격을 잃게 됨과 동시에 인정번호는 삭제돼 무효가 된다. 매년 보유사에 따른 자주점검을 하고 세트의 관리상황이 보고서로 원기운용관리위원회에 제출된다. 또 3년에 한번은 동 위원회의 「체크부회」가 점검을 받은 인정갱신을 하고 있다.

* AGL은「JJA/AGL인정 마스터스톤 세트」의 보유를 회원자격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번호가 취소되었을 경우 AGL 자격도 동시에 잃게 된다. 또 AGL을 퇴회 또는 제명 처분되었을 경우, 인정번호의 사용은 정지된다.

평성 23년 갱신을 마친 인정번호 일람 (JJA/AGL 인정 마스터스톤 세트)

012 013 014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43 046 050 053 055 056 057 067 068
070 071 073 074 075 076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3 501 502 503

06. 반대패널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우신보석감정원의 의견

- 우신보석감정원 실장 김영호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우신보석감정원의 의견

최근 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이라 한다)에서 'KS규격 단체인증으로 소매유통을 비롯한 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신보석감정원(이하 '우신감정원')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인증제도시행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공정한가.
- 오늘날 2006년의 다이아몬드 KS 규격안의 사용은 적절한가.
- 국내 감정기준과 감정시장은 비정상적인가.
- 국내 봉인감정서 / 약관 관련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공정한가.

감정원은 도소매상, 소비자,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보석 판매거래 등 가격평가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단체장협의회 산하 위원회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주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자는 해외 기준을 파악하고 국내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시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보석시장에서 유통과 판매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단체장협의회 산하에 관리, 감독 기관이 위치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협에서 단체관리 제도의 예로 드는 일본의 AGL도 단체의 주체는 '보석 감별서 또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발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석감정원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주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료 1).

자료1. AGL (일본 보석감별단체협의회) 규정

일본의 보석감정원「AGL」감독 하에 운영

AGL(Association of Gemological Laboratories JAPAN, 일본 보석감별단체협의회)은 일본에서 보석 감별서 또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발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석감정원들의 모임으로

일본 내에 있는 20여개의 독립된 보석감정원들이 도쿄에 있는 AGL의 감독 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

AGL의 설립 목적과 사업

보석의 감별, 감정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의 공통과제를 협의해 감별업계의 향상과 조화에 힘써 소비자 및 보석업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감별서 및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기본적인 기재표시규정의 작성 및 보급
2.감별, 감정에 관한 과학적 판정 기준의 연구 및 종합 조정
3.감별, 감정 방법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연구
4.감별, 감정의 판정 차이에 의한 상담 조사
5.감별, 감정 업무의 책임과 보상 범위의 확립
6.감별, 감정에 관한 소비자 상담

특히, AGL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보면 단체인증제도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GL은 감별·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와 정보교류를 중심으로 하며, 책임과 보상, 소비자 상담이 주요업무 입니다. AGL은 회원인 감정원들에게 어떠한 단체인증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형 단체인 단협이 공정성을 유지하여 중립의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협은 귀금속·보석업계 전반의 모임이기에 다수의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협회 내의 다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인 감정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협 내 보석감정사협회, 다이아몬드협회 등 관련 전문협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체인증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단협 산하 단체인증제도의 실행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둘째, 현재(2015) 2006년 다이아몬드 KS 규격안 사용은 적절한가

2006년 우리시장에 완전등급제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하기 이전과 현재 완전등급제가 정착한 시점에 그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KS규격은 당시 ISO/FDIS 11211-1,2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ISO/FDIS 11211이 만들어진 이유는 감정원간의 호환성을 위하여 그 당시 통일되지 않은 등급 관련 용어와 감정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 감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감정기준의 등급표기 방식, 커팅 코멘트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단협은 KS규격을 사용하여 현행 감정서간의 가격 차이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의 가격차이는 시장경제에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GIA, HRD, IGI의 유통 가격은 전부 다르게 거래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판단하는 감정원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국내 감정원의 등급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이아몬드 KS 규격안을 만든다는 것은 감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년간 감정을 한 많은 전문가들과 다량의 샘플링, 감정원간의 등급 교차 확인 등 많은 연구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기준으로서 CIBJO(세계보석연맹)에서 발행한 다이아몬드 북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ISO/FDIS 11211-1,2의 기본이며, 당연히 KS규격의 기본입니다. 2015년 발행된 CIBJO 다이아몬드 북(diamond commission 2015-1) 중 8.4 Clarity 부분(ISO와 국내KS 규격도 동일한 내용임)과 KS규격의 '부속서 A(규정) 클레러티의 예'를 보면 감정은 가이드 라인이 존재할 뿐 규격화(수치화, 계량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자료 2)

자료 2.

8.4. Clarity - Corresponding terms for clarity grades (informative) 중 VS,SI, I 등급 규정

Very Slightly Included/Very Small Inclusions (VS)
VS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VS1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difficult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VS2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somewhat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lightly Included/Small Inclusions (SI)
SI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I1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I2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very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Included 1 or Pique 1 (I1/P1)
I1/P1 diamonds shall contain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are prominent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They shall also be visible face up to the naked eye.
NOT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ternal characteristics / inclusions may also be visible face up to the naked eye in higher grades.

A.7 SI_1(Slightly Included 1) 등급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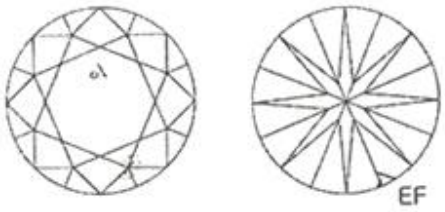

작은 크리스털, 페더를 둘러싸고
있는 클라우드, 페더, 엑스트라 패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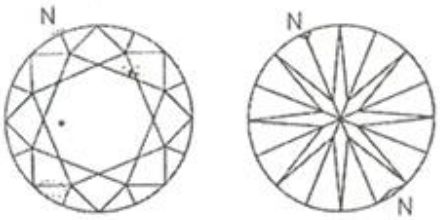

크리스털, 클라우드, 내추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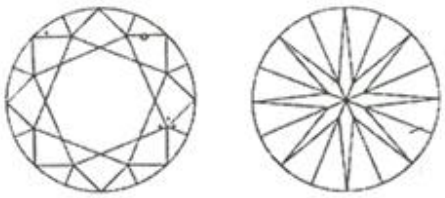

크리스털, 스크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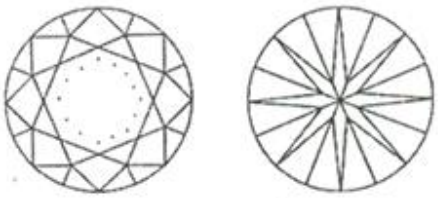

투명도를 저해하는 클라우드

A.8 SI_2(Slightly Included 2) 등급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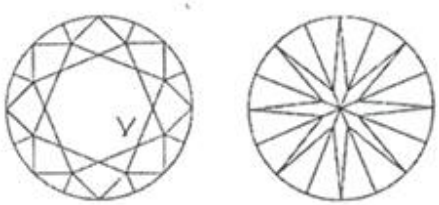

쉽게 발견되는 테이블에 있는 페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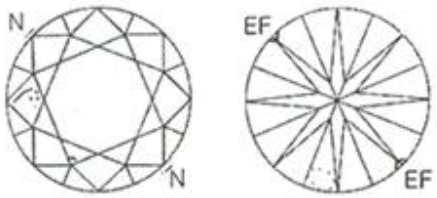

페더, 테이블 밖에 있는 크리스털들,
퍼벌리언에서만 보이는 클라우드,
내추럴, 엑스트라 패싯

셋째, 국내 감정시장(기준)은 비정상적인가

1) 동일 등급에 대한 국내 감정원의 등급 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이란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원 마다 감정사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특성상 국제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컬러 혹은 클래러티 등급이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과거 2004년 pricescope(Diamond and Jewelry Community 사이트)에서 실시한 GIA, AGS, EGL USA 간의 등급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동일하거나 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pricescope는 본 조사에서 감정은 사람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감정원이 더 엄격하고 완만한지에 대하여 비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자료 3).

자료 3. pricescope 의 감정등급 비교조사 결과 중에서

Diamond grading is not a science; it is a subjective skill. As mentioned, none of the 17 diamonds in this survey was given the same grade for color and clarity by all three laboratories. Due to the subjectivity of human color and clarity grading,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ay whether one or another grade is absolutely accurate. Instead we decided to consider whether two of the labs grades were stricter or softer compared to GIA-GTL grades. We made this decision because GIA-GTL is the largest lab and is considered as a market leader.

다이아몬드 감정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기술이다. (중략) 칼라와 등급은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원이 더 엄격하고 어떤 감정원이 더 완만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시장의 인정범위를 벗어난 감정결과를 보인다면 2013년 라파포트 RapNet(Rapaport Diamond Trading Network)사례(라파포트가 GIA, HRD, IGI, EGL USA, EGL Hong Kong, EGL Israel 6개 감정원의 감정등급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상대적으로 심한 등급차이를 보인 EGL 감정원이 RapNet에서 누락되었다)에서 보듯이 자연히 시장에서 배척 당하는 것입니다(자료 4).

자료 4. 라파포트가 6개 감정원의 감정등급을 조사 분석한 결과 중에서

Stock Num.	**Test 5**					
Shape	Round					
Weight	1.01 carats					
Measurements	6.62*6.56*3.91					
Lab	GIA	IGI	EGL USA	EGL HK	EGL Israel	HRD
Color	K	K	I	H	G	J
Clarity	SI1	SI1	VS2	VS2	VS1	SI1
Cut	VG	VG		EX	VG	VG
Polish	VG	VG	G	EX	VG	VG
Symmetry	G	G	G	EX	VG	G
Fluorescence	Faint	Faint	None	None	None	None

Stock Num.	**Test 7**					
Shape	Round					
Weight	1.06 carats					
Measurements	6.54*6.44*4					
Lab	GIA	IGI	EGL USA	EGL HK	EGL Israel	HRD
Color	G	F	F	E	D	F
Clarity	VS2	VS2	VS2	VS1	VS1	VS1
Cut	VG	VG		EX	EX	VG
Polish	VG	VG	G	EX	EX	EX
Symmetry	G	G	VG	EX	EX	G
Fluorescenc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Stock Num.	Test 10					
Shape	Round					
Weight	1.01 carats					
Measurements	6.42*6.48*4.01					
Lab	GIA	IGI	EGL USA	EGL HK	EGL Israel	HRD
Color	F	F	E	D	D	F
Clarity	I1	I1	SI2	SI1	SI1	SI2
Cut	VG	VG		EX	EX	VG
Polish	VG	VG	G	EX	EX	VG
Symmetry	G	G	VG	EX	EX	VG
Fluorescence	None	None	None	None	None	Slight

위의 결과는 각 감정원들의 감정기준을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감정원의 감정기준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해외 주요 감정원들은 본원의 감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각각의 감정원은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GIA의 기준(용어 및 평가방법)과 CIBJO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감정원의 세부 기준에 따라 감정한 것입니다. 라파포트도 EGL의 감정등급이 현재 유통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등급 차이를 벗어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거래 사이트에서는 제외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국내의 감정기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KS 규정을 만들자고 하지만 국내 주요 감정원들의 감정은 국제규격에도 과거 만들어 놓은 KS 규격에도 적합합니다. 일부 불량 감정원의 감정서와 시장에 올바르게 유통되는 감정서를 비교하여 감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에 올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한 감정원에서 동일 스톤에 대한 등급 결과 차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등급의 차이는 인정범위 내이고 이것은 KS규격과 단체인증제도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감정기준이 잘못되어서 발생한다거나 우리나라만의 KS규격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거 GIA도 같은 스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의 차이를 두고 같은 스톤에 대하여 VS1을 VS2로 감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등급의 경계선 상에 있는 스톤은 동일 감정원이라고 하여도 등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료 4).
(우신 감정원의 경우 인수정책으로 감정원의 실수를 책임지고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료 4. GIA Resubmission Difference 중에서

> This diamond already had a GIA-GTL report (Oct. 2003) and was inadvertently resubmitted to GIA-GTL. It was to have been sent for an AGSL report, which explains the absence of AGSL data. The second report (April 2004) received the same color grade but

a one grade stricter clarity (VS1 down to VS2). For consistency purposes a comparison was made using the first GIA-GTL report.

To underline the subjectivity of diamond grading it is worth noting that stone #10 already had a 6 month old GIA-GTL report, but was inadvertently resubmitted to GIA-GTL (it was to have been sent to for an AGSL report, which explains its absence). The color was given the same grade, but the clarity on the GIA-GTL report was VS1 on the earlier October 2003 report and VS2 on the April 2004 report. In discussions with the GIA about this particular stone they noted that in their private records on both occasions that it was a border line VS1 / VS2.

넷째, 국내 봉인감정서 / 약관관련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1) 봉인감정서 서비스

'국내시장의 봉인된 감정서로 인하여 상인들이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봉인된 다이아몬드 감정서란 것이 감정원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고안된 상거래 방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유통하는 도·소매상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봉인의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마치 국내 감정원이 소비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봉인은 해외 기타 모든 감정원과 동일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W감정원	H감정원	GIA	HRD	IGI
봉인/비봉인 서비스	O	O	O	O	O
비 고	GIA는 2014년 10월부터 정지 (다만, 온라인상에는 봉인서비스가 아직 명시되어있음)				

이처럼 봉인과 비봉인은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의 영역이지 감정원이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언제라도 비봉인 감정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봉인서비스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유통 중,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싶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신 감정원의 봉인서비스에 의하면 봉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 감정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다이아몬드 협회 조사 시 소매상 82%, 도매상 76%가 봉인을 선호하였습니다. 현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유통되는 형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감정원 약관 문제

현행 국내 감정원의 약관은 결코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원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감정서 약관은 GIA, HRD, IGI, AGL(CGL), NGTC 등 대부분의 감정원이 사용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의 유명감정원인 HRD, IGI, GIA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처리 등의 방법이 더 다양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감정 당시의 기술로 발견할 수 없는 처리 등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자료 5), '감정서는 품질평가서나 보증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료 6).

자료 5. GIA의 Client Agreement 중 3page

the ways in which an Article might be treated or processed are changing and dynamic and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 a result, it might not be possible in all cases to determine whether an Article has been processed or treated using GIA's then-current techniques and technology and GIA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to Client in this regard.

자료 6. GIA의 Client Agreement 중 4page. / IGI 의 TERMS & CONDITIONS 중에서

(GIA) ~ a Report is not a guarantee, valuation, or appraisal, and may not be referred to as such, GIA does not give economic valuations of Articles,~ (IGI) ~ By making this Report IGI does not agree to purchase or replace the article(s). Neither the Client nor any purchaser of the article(s) shall regard this Report as an appraisal or as a guaranty/warranty.

재감정에 대하여도 GIA는 '재감정시 감정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레이저 각인 또한 임의 제거, 수정 등을 이유로 스톤의 품질과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료 7).

자료 7. GIA의 Client Agreement 중 4page (11)No Warranties 부분

~(v) the results of the Services performed by GIA on an Article may differ from the results of similar services performed on the same Article by others depending upon when, how, and by whom such services were performed, the then-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used for such services, and may differ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echniques and equipment, (vi) a GIA Inscription or other pre-existing inscription or markings does not guarantee the identification, quality, origin or source, of an Article because, among other reasons, third parties might inscribe an Article and any

GIA Inscription or other pre-existing inscription or markings may be removed by polishing, ~

감정소가 감정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 결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감정기술 및 감정장비 발달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은 수정, 제거 및 임의 각인이 가능하므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동일 여부를 증명하거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감정원의 유의사항은 일반적이며 국내·외 모두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신 감정원의 경우, 감정서와 스톤의 일치 여부 확인이 무료이며 재감정의 기간제한도 해외 유명 감정원들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또한 감정원의 실수로 발생한 오감정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된 재감정 스톤에 대하여도 해당 스톤의 인수정책을 시행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W감정원	GIA	HRD	IGI	AGL(CGL)
감정서확인 (re-check)	무료	유료	유료	유료	유료
재감정기간	없음	60일	-	-	1년(2년)
비고	-GIA는 60일 지나면 새로 감정해야함. (도시에, eReport는 재감정 안됨) -중국 NGTC(국가 규약집 사용): 감정서 원본 아니면 확인 불가능, 재감 서비스 없으며 각인이 있어도 확인 불가능(각인 위조 가능이 이유)				

국내 감정원의 약관이 불공정하여 단체인증을 통해 '감정소 표준약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감정원만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원에서는 언제든지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단체인증제도의 적합성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뢰도가 높은 감정서를 원합니다.

해외의 유명 감정원들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감정등급 유지와 등급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 관리 감독하는 중국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NGTC감정서를 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현재 중국 내 유통시장에서 자국의 NGTC감정서가 거래시세표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GL 산하 CGL이 주로 활동하며, GIA 감정서가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단체의 관리보다 시장에서의 신뢰도(브랜드

명성)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감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는 판매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등급의 감정을 하는 감정원이 있다면 이는 곧 시장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국내의 일부 감정원의 영업중단과 의뢰 감소 현상, 해외의 EGL이 라파포트 거래에서 제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관리, 감독자는 시장이며 최후의 평가자 또한 시장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 감정원은 감정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위하여 단체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인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기준의 확립', '봉인문제 해결', '감정소 표준약관 마련'이 본 제도의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단체인증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현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 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라는 업무 고유의 특성상 '수치화, 계량화로 정형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인증제도와 KS규격을 통해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현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단체인증제도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제도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확립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원의 잘못으로 시장에 혼란과 악영향을 준다면 이는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단협은 제도의 시행만을 서두르기보다는 보석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서언

보석업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보석업계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천연, 합성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또 각종 처리기술도 교묘하게 발달돼 그 감정·감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보석상들이 보석의 감정·감별에 대한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감정·감별서가 등장했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매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감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 감정·감별기관의 등장은 보석업계의 분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신이 깊이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감정서에만 의존해 적당히 장사를 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에 편승해 공정해야 할 감정업무가 업자와 감정기관과의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등급이라도 어디에서 감정했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소매상의 전문지식이 미진하다는 것을 핑계로 다이아몬드를 감정서에 봉인해 줌으로서 다이아몬드의 딱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진이 없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감정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감정리포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감정서(그레이딩 리포트)란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검사와 같은 것이다. 의사가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이 보석상은 감정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감정서란 가격평가서도 아니고 아름다움의 정도를 표시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치가 있는가는 보석상이 실제로 구입할 다이아몬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감정원들은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을 해 소매상들이 보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막아놓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감정을 함으로써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상한 다이아몬드 감정시장을 형성해 놓았다.

업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수 없이 시도했지만 기존감정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노력과 잘못된 감정서를 적당히 판매에 이용하려는 기존의 질서 때문에 잘못된 감정관행이 고쳐지기는 커녕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산하에 다이아몬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가규격인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기초로 "다이아몬드감정인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이아몬드의 감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하고 못하는 실력의 차이보다는 일관성이다. 감정이란 어차피 육안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정한 감정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가격차이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감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감정원들과 협력해 올바른 감정관행을 정착시킴으로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업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국가규격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KS D 2371-1 및 KS D 2371-2)에 의거하여 감정을 함으로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주얼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인증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 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로고로써 상표등록 또는 서비스등록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
2. 표시자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성적서(감정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 2 장 운 영

제 3 조 제도의 운영

1. 본 인증제도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산하 다이아몬드위원회에서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표시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장협의회 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단체장협의회와 표시자회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보장받는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위원의 보수는 유상으로 하며,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1. 위원회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경우 소집되며, 재적 위원의 2/3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3. 위원회는 1차 마스터스톤 관리 및 인증제도운영을 담당하며 단체장협의회로부터 총무, 재무,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4.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차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의 운용에 관한 업무
   (2) 인증마크 관리 및 등록심사에 관한 업무
   (3) 본 규정 제 19 조 및 제 20 조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 5 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해 직무상 얻은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표 시 자

제 6 조　등　　록

1.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표시자만이 본 제도를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인증마크 사용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인증마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주내에 제 7 조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4. 심사를 통과한 표시자는 인증마크 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인증마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제 7 조　등록 요건

인증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해당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시설요건

(1) 다이아몬드 감정을 위한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1 감정장비 참조)
(2) 인증된 기준의 마스터스톤 보유 (#2 Master stones 요건 참조)
(3) 보석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의 보유
(4)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경비시스템)

2. 인적요건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예; G.G-GIA, HRD, FGA 등)을 소지한 3인 이상의 감정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단 이중 1인 이상은 필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책임 감정사는 감정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어야 하며 나머지 2인은 감정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3. 관리 요건
(1)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KS D 2371-1 및 2371-2)에 의거하여 다이아몬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발행된 모든 감정서에 대한 내용을 최하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등록의 갱신

1. 표시자의 등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로부터 기한 전에 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유효기간 종료 전에 등록갱신비용의 선납에 의해 자동 갱신된다.
3.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4. 등록 갱신 기한 전에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 등록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등록해제신청서를 접수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표시자의 의무 및 책임

1. 표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표시자의 감정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표시자는 인증마크 관리를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3. 표시자는 인증마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표시자는 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표시자는 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표시자의 자격 정지 및 등록 해제

1. 표시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이 해제된다.
   (1)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아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2) 등록해제신청이 수리되었을 경우
   (3) 갱신기한을 넘겨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표시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였을 경우
   (5) 기타 제 9 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표시자가 그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이 해제된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자격 정지 또는 등록 해제 통보
   (2) 자격정지 통보 및 인증마크의 회수 조치
   (3) 관련 업계지, 잡지 및 기타 매체에 자격 정지 내용 공표
   (4) 필요한 경우, 법률 등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제소 등의 조치

제 11 조 등록정지 및 등록해제에 동반되는 조치 및 의무

자격정지 또는 등록해제 된 표시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지 기간 중 인증마크의 사용 행위 금지
2. 등록해제 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인증마크가 인쇄된 용지를 위원회에 반납
3. 비록 등록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기간 중에 일어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표시자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표시자의 공개

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표시자에 대하여 표시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인 증 마 크

제 13 조 인증 마크의 형태

표시자가 사용할 인증 마크의 형태와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인증마크의 표시 방법

표시자는 인증마크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정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감정서에 직접 인쇄
2. 철인 또는 스티커 등
3. 인증마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 변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인증마크의 사용

1. 다이아몬드 감정서 및 부속서
2. 기타 홍보 및 광고

제 16 조 검사

1. 공정한 인증마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표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은 표시자의 제출품, 시제품 및 소비자 제출품 등으로 한다.
3. 검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시료는 시제품 중에서 무작위 차출 방식을 채택하고 수시 검사 방법으로 한다.
4. 검사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17 조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마크의 사용 현황
2. 인증마크인쇄를 위한 외부자 위탁여부 및 그 관리 상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개선 권고 및 불복 심사

제 18 조　개선 권고

1. 표시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검사 및 검사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표시자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한다.
2. 당해 표시자가 위원회에서 고지한 개선기한 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때 위원회는 해당 표시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19 조　불복 신청

1. 표시자는 개선권고, 자격정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접수된 불복신청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적합여부를 심의하고 불복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불복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익 및 회계

첨부 # 1.

감 정 장 비

1. 인증된 다이아몬드 컬러마스터스톤 세트
2 보석용 현미경(3대 이상)
3. 다이아몬드컬러등급에 필요한 광원(KS D 2371-2 6.3.7 광원)
4. 프로포션 측정장비(컴퓨터 측정장비: 메가스코프, 다이아멘션 등)
5. 자외선형광기구
6. 전자저울 (1/1,000ct 수준 측정 가능)
7. 기타 감정장비 및 보조기구

형광마스터스톤(참여 감정소 협의 사항)

첨부 #2.

마스터스톤(masterstones; 기준석)의 인증요건

A. 색등급을 위한 마스터스톤

1차 마스터스톤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터스톤

1. 크기 : 0.30ct 이상
2. 수량 : 8개 (E. F. G. H. I. J. K. L) 이상
3. 클래리티 : 교정시력으로 내부특징이 보여서는 안 됨
4. 형광성 : 약함(Faint) 보다 강해선 안 됨
5. 형태 : 라운드 브릴리언트 형태
6. 마무리 : 최소한 Good
7. 프로포션 : Good 범주 내
8. 색상 : 황색계열
9. 하나의 세트에 속해있는 모든 기준석들은 중량, 연마비율이 유사하여야 하고 거들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B. 형광 기준석

1. 기준 : Faint, Medium, Strong, Very strong 강도의 최소형광치에 위치하며 청색형광을 띠는 것이어야 함
2. 크기 : 0.25ct 이상
3. 수량 : 3개 이상
4. 형태 ; 라운드 형태